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 13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가. 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74호에 의거 산림청소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도 관련부서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련부서 변경

• 당초 : 녹지공원과

• 변경 : 환경위생과

○ 위임내용

• 야생조수 보호(유해조수 구제허가, 포획한 조수로 신고, 조수 인공사육 허가, 박제업 등록)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재274호
의결년월일	2000. 1. 21 (제76회)

제출년월일 : 2000. 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74호에 의거 산림청소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도 관련부서로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련부서 변경
 - 당초 : 녹지공원과
 - 변경 : 환경위생과
- 위임내용
 - 야생조수 보호(유해조수 구제허가, 포획한 조수로 신고, 조수 인공사육 허가, 박제업 등록)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 중 실·과·소별 녹지공원과 위임사무명 제3호를 삭제하고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명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위생과	6. 야생조수 보호	가. 유해조수 구제허가 나. 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 조수 인공사육 허가 (신고) 라. 박제업 등록	•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 • 동법제21조제4항 • 동법제22조 • 동법제23조	구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녹지 공원과	3. 야생조수 보호	가. 유해조수 구제허가 나. 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 조수 인공사육 허가 (신고) 라. 박제업 등록	환경 위생과	6. 야생조수 보호	가. 유해조수 구제허가 나. 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 조수 인공사육 허가 (신고) 라. 박제업 등록